

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3의2] <신설 2025. 7. 1.>

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제78조제2항 관련)

1.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. 다만,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·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)
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
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
 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[같은 호 아목, 자목, 너목, 더목 및 러목(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)은 제외한다]
 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
 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참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1)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용 참고
 - 2) 「농업협동조합법」,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 또는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·운영하는 농업·축산업·수산업·임업용 참고
 -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(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)
 -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
 -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·군사시설
 -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
 - 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
2. 도시·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(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. 다만,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·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)
 -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(아파트는 제외한다)
 -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·자목·너목(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) 및 러목(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)의 시설
 -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
 -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
 -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 - 1)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
 - 2)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

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(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·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)

가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

나)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

다)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

라)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업인인 어업인

마) 지방자치단체

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 및 요양병원

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

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

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

차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1)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

2) 「농어촌정비법」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

카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·나목·라목·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(같은 호 가목·나목·라목·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)

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

파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가목·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(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·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)

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(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)

거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

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